#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태영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031

발의연월일: 2021. 12. 22.

발 의 자 : 태영호·허은아·배준영

김예지 · 강기윤 · 김영식

권영세 · 조경태 · 송석준

이 영・박성민・황보승희

의원(12인)

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대출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으로,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음.

그런데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, 우리나라 가구주 평균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,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평가가 격 상한을 15억원으로 설정함으로써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과 주택 연금의 건전성을 아울러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3조의11).

법률 제 호

#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9억원"을 "15억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의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한 담보 평가가격의 상한은 1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아 정 제43조의11(주택담보노후연금보 제43조의11(주택담보노후연금보 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) ① 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) ① 제2조제8호의2 · 제9조제4항 · 제43조의2 · 제43조의4 · 제43조 의5·제43조의7 및 제43조의8 에 따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으로서 「부 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(해당 가격이 없는 경우에 는 위원회가 정한 제9조제4항 제3호의 보증기준에 따른 가격 을 말한다)이 9억원을 초과하 ---15억원-----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공사가 「소득세법」 제89 <삭 제> 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 의 기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 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려는 경우 연금지급액을 결 정할 때에는 「소득세법」 제8

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본다.<신 설>

③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의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한 담보 평가가격 의 상한은 15억원 이하의 범위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한다.